

1. 민방위대 대상

- 편성 대상자
 - 편성 의무자, 편성 지원자
- 편성 제외자
 -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 『법정 제외자』

2. 편성 의무자

- 만 20세~만 40세 해(年)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
 -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편성
 - (2021년 편성 의무자) 1982.1.1.~2002.12.31.생
 - (신규 편성자) 2002년생
 - (편성의무 해제자) 1981년생
- 학생 졸업자,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(대학원생 등 예외자는 아래 참조)

1] 법정 제외자

- 근거 : 민방위기본법 제18조, 시행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17조

제외 대상	제 외 자	신 고 자	
		사유발생	사유소멸
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(학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*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,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○ 경찰대학, 한국과학기술대학(KAIST) ○ 대학원, 대학원대학(석사과정에 한함) * <u>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</u> ○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※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직업학원 등은 제외 	학교의 장 또는 본인	학교의 장 또는 본인
(심신장애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·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○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○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	본인 (직권 또는 심의처리)	본인
(만성허약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	본인 (심의처리)	본인